##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(송기헌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974

발의연월일: 2021. 5. 10.

발 의 자:송기헌·김성주·김의겸

김종민 · 남인순 · 민병덕

이광재 • 이해식 • 장철민

정일영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 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,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내에 알지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되, 상속인이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인 경우 위 3개월의 기간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기산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,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기준으로 미성년 상속인의 한정승인 기간을 기산하도록 하면,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 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단순승인을 한 경우, 미성년 상속인이 상속채무를 온전히 부담하게 되고 성년이 된 후에도 상속채무로부터 구제받을 수 없는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. 이에 상속인이 미성년자이고,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단순승인을 하였더라도 한정승인을 한 것으로 봄으로써 미성년 상속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(안제1019조제4항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### 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1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미성년자이고,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단순승인(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하였더라도 한정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.

제1030조제2항 중 "제1019조제3항"을 "제1019조제3항 및 제4항"으로 한다.

제1034조제2항 본문 중 "제1019조제3항"을 "제1019조제3항 및 제4항"으로 한다.

제1038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후단 중 "제1019조제3항"을 각각 "제1019조제3항"을 각각 "제1019조제3항 및 제4항"으로 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적용례) 제101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인이

된 미성년자부터 적용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第1019條(承認, 抛棄의 期間) ①	第1019條(承認, 抛棄의 期間) ①
~ ③ (생 략)	~ ③ (현행과 같음)
<u> &lt;신 설&gt;</u>	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
	이 미성년자이고, 상속채무가
	<u>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</u>
	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단
	순승인(제1026조제1호 및 제2
	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
	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하였
	더라도 한정승인을 한 것으로
	본다.
第1030條(限定承認의 方式) ①	第1030條(限定承認의 方式) ①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② <u>제1019조제3항</u> 의 규정에 의	② 제1019조제3항 및 제4항
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	
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	
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	
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	
第1034條(配當辨濟) ① (생 략)	第1034條(配當辨濟) ① (현행과
	같음)
② <u>제1019조제3항</u> 의 규정에 의	② 제1019조제3항 및 제4항
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	
그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에서	

남아있는 상속재산과 함께 이 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제1항의 변제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한 가액은 이미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한다.

第1038條(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) ① 限定承認者가 第1032 條의 規定에 依한 公告나 催告 를 懈怠하거나 第1033條 乃至 第1036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어느 相續債權者나 遺贈 받은 者에게 辨濟함으로 因하여 다 른 相續債權者나 遺贈 받은 者 에 對하여 辨濟할 수 없게 된 때에는 限定承認者는 그 損害 를 賠償하여야 한다. 제10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 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상 속인이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한 때에도 또한 같 다.

<b></b> .
1038條(부당변제 등으로 인한
책임) ①
제1019조제3
· <u>제1013보세8</u> 항 및 제4항

② 제1항 전단의 境遇에 辨濟를 받지 못한 相續債權者나 遺贈 받은 者는 그 事情을 알고辨濟를 받은 相續債權者나 遺贈받은 者에 對하여 求償權을 行使할 수 있다. 제1019조제3항의 구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고 변제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. ③ (생략)

(2)
제1019조제3항
<u>및 제4항</u>
③ (현행과 같음)